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의
장

제1826호 2024. 3. 1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3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48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5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5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 7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6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 ————— 96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5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65 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3. 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3-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72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65 (가좌동)	20090922	천일염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50-191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95번길 7-1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4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3번길 10-16 (청라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47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531 (연희동)	20090710	계양산과 천마산사이 징행이고개를 통과하는 도로구간으로 징행이고개의 한자표기말인 <경명>명칭에서 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제2024-531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3.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공 고 기 간 : 2024. 03. 11. ~ 2024. 03. 26.(16일간)
-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141구3009 등 17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2,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2)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141구3009	Mercedes-Benz S350 d	하**	2024.02.07
2	292루4176	쏘나타(SONATA)	이**	2024.02.07
3	08오3250	스타렉스9인오토	박**	2024.02.13
4	15고9343	Q3 35 TDI quattro	조**	2024.02.14
5	221코5770	투싼(TUCSON)	안**	2024.02.14
6	29오4545	E200 Cabriolet	김**	2024.02.14
7	11모7278	모닝	한**	2024.02.15
8	282서5062	레인지로버 4.4D	권**	2024.02.15
9	364마8988	Mercedes-AMG E53 4Matic +	권**	2024.02.15
10	396누6673	그랜저 하이브리드 (GRANDEUR HYBRID)	명**	2024.02.16
11	255머1556	Mercedes-Benz S580 4MATIC	하**	2024.02.19
12	61우4360	K9	송**	2024.02.20
13	33누5429	C220 d	하**	2024.02.22
14	390코3019	EQ900	김**	2024.02.23
15	49무6556	모닝	김**	2024.02.28
16	179주1107	Mercedes-Benz E350 4MATIC	하**	2024.02.29
17	61노7576	G90	하**	2024.02.2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54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의 일반우편의 기준 변경 (안 제5조)

- 1매당 세액이 30만원 →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의 일반우편의 기준 변경 (안 제5조)
 - 1매당 세액이 30만원 →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을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u>1매당 세액이 30만원</u>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 ----- ----- ----- ----- <u>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 ⑨ 생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 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0.12.29] [[시행일 2024.1.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26, 2020.12.29] [[시행일 2024.1.1]]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1]]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9] [[시행일 2024.1.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5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 부과·징수 등 관련 행정을 일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법률상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칭 변경함. (안 제4조, 제1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2024.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 부과·징수 등 관련 행정을 일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의 법률상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칭 변경함. (안 제4조,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27. 생략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8의2.~36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5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 이 ‘제103조의4제1항’ 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나.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 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 ('24.1.1.시행)으로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조문이 신설되고,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의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이 ‘제103조의4제1항’으로 이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 나.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03조까지”를 “제103조의2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u>법 제71조의2제1항</u>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u>법 제71조의2제1항</u>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p> <p>2.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 ----- ----- ----- <u>법 제103조의4제1항</u>----- ----- ----- ----- ----- ----- ----- -----</p> <p>1. ----- ----- <u>법 제103조의4제1항</u>----- ----- ----- -----</p> <p>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u>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u>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1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03조의2까지</u>----- ----- ----- -----</p> <p>③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
-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종전 제103조의2는 제103조의3으로 이동 <2023. 12. 29.>]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제103조의3에서 이동 <2023. 12. 2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547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24.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서식의 인용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칭 변경함. (안 제4조, 제18조)
- 나.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납부자연가산세'로 명칭 변경함. (안 제9조제1항, 제15조)
- 다. '결손처분'을 '시효완성정리' 또는 '정리보류'로 제명 및 문구

변경함.(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영 제74조의2제5항” 을 “영 제91조의11제5항”
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21조)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세무1과, 전화 032-560-4192, 팩스 032-560-27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2022.1.28.) 사항에 따라 결손처분 사유 성격 별로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법령에 맞는 용어 구분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24.1.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서식의 인용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칭 변경함.(안 제4조, 제18조)
- 나.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 변경함.(안 제9조제1항, 제15조)
- 다. ‘결손처분’을 ‘시효완성정리’ 또는 ‘정리보류’로 제명 및 문구 변경함.(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라.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영 제74조의2제5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으로 인용조문 변경(안 제21조)
-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결손처리”를 “시효완성정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은”을 “정리보류 등은”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을 “납부지연가산세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정리보류를 취소”로 한다.

제18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5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지연가산세 적용례)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		결정결의서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담당		납액 통지 제 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목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인)
				등재 환급금	(인)
정리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수 납 부

과세번호	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과세물건지	부과금액	감액	정당세액
과세물건	과표액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명	세목						

297mm×210mm(백상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정 리 보 류 표									
결재				<div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div>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갑)]

(뒤 쪽)

정 리 보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4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 신청자격 입증서류
-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자격 입증서류

[별지 제13호서식]

인천광역시서구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채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세 포함)
체납처분비				
합계				

끝.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제14조(정리보류 등) -----
 - 정리보류 등은 -----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 -----
 -- 정리보류표-----
 -.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
 ----- 정리보류를 --

 ----- 정리보류 취소액--
 ----- 납부지연가산세를 -----

 -----.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

 ----- 정리보류를
취소-----
 -----.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

 ----- 지방세통합정보
통신망 -----

<p>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 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p> <p>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u>영</u> <u>제74조의2제5항</u> 및 제6항의 인계· 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 다.</p>	<p>----- -----.</p> <p>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u>영</u> <u>제91조의11제5항</u> ----- ----- -.</p>
---	---

관계법령 발취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3. 삭제 <2022. 1. 28.>
-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제목개정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직접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매각 대상 예술품등을 전문매각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예술품등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예술품등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예술품등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생략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7. 생략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36. 생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12. 29.>

1.~2. 생략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생략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text{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times \text{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 548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정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4. 3.11.
서 구 청 장

- 1. 목 적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
- 2. 예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게재
- 3. 행정예고 기간 : 2024. 3.11. ~ 2024. 3.31. (20일간)
- 4. 의견제출 기간 : 2024. 3.11. ~ 2024. 3.31. (20일간)
- 5. 관련근거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 6.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연번	위 치	상세위치		비고
		시점	종점	
1	가좌동 195번지 일원	가정로126번길 17	가석로126번길 9	L=250m B=8m
2	가좌동 200번지 일원	신진말로 16	신진말로14번길 33	L=400m B=8m
3	신현동 107-42번지 일원	염곡로397번길 15	염곡로 395	L=170m B=8~10m
4	검암동 536-1번지 일원	검암로2번길 37-11	검암로20번길 52	L=300m B=6m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서구청 도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서구청 도로과 보도관리팀)
- 연락처 : 032-560-3392(도로과 보도관리팀)
- 팩 스 : 032-560-2764(팩스 제출 시 유선 확인 요청바람)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가좌중 보행자우선도로(가좌동 195번지) 일원



시점

종점



건지초 보행자우선도로(가좌동 200번지 일원)



시점

종점



신현고 보행자우선도로(신현동 107-42번지 일원)



시점

종점



은지초 보행자우선도로(검암동 536-1번지) 일원



시점

종점



붙임2.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5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2.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을 의무화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18조제9호)
 - ‘문자해득’에서 ‘문해’로 용어 개정(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평생교육의 분야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추가

나.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항 정비
(안 제17조)

- 재량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교육지원과, 전화 032-560-5911, 팩스 032-560-27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을 의무화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용어 정비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 제2조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안 제2조, 제18조제9호)

- ‘문자해득’에서 ‘문해’로 용어 개정(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평생교육의 분야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추가

나. 평생교육법 제21조의3 개정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항 정비(안 제17조)

- 재량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독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인문교양교육”을 “성인 진로 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으로 한다.

제16조 중 “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중 “을 동에는”을 “을,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에는”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호 중 “문자해독 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1. ~ 8. (생략)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
사업 및 문자해독 교육 지원

10.·11. (생략)

제19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
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 4. (생략)

<신설>

-.

1. ~ 8. (현행과 같음)

9. -----
----- 문해교육 -----

10.·11. (현행과 같음)

제19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동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관계법령 발췌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시행일: 2024. 4. 19.] 제2조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시행일: 2024. 4. 19.] 제21조

제21조의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② 제1항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6. 5. 29.>]

[시행일: 2024. 4. 19.] 제21조의3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561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판매소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여 민원인 편익 증대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일방적인 영업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 신설

3. 주요내용

- 판매자 준수사항 중 ‘모조 쓰레기봉투 및 파손 또는 오물 묻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지’ 규정을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로 문구 정비 (안 제3조)

- 판매자 준수사항으로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 이상의 물량 확보 의무 추가 (안 제3조)
- 판매소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6조)
- 쓰레기봉투판매지정서 뒷면 판매자 준수사항 정비 (안 별지 제2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원순환과, 전화 032-560-4552, 팩스 032-560-276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판매소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일방적인 영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판매자 준수사항 중 ‘모조 쓰레기봉투 및 파손 또는 오물 묻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지’ 규정을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로 문구 정비 (안 제3조)
- 나. 판매자 준수사항으로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최소 1주일 판매예상량 이상의 물량 확보 의무 추가 (안 제3조)
- 다. 판매소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6조)
- 라. 쓰레기봉투판매지정서 뒷면 판매자 준수사항 정비 (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쓰레기봉투판매 지정서를”을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및 표시판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7.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 이상의 물량 확보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뒷면)

판매자 준수사항

1.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표시판 및 판매가격표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게시)하여야 한다.
 2. 불법 쓰레기봉투를 진열 및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쓰레기봉투는 포장단위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 요청시 날개로 판매하여야 한다.
 4. 구매자의 환불요구 시 즉시 판매가로 환불하여야 한다.
 5. 판매소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최소 1주일 예상판매량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판매인의 명의(승계)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일 10일 전 판매상호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또한, 판매인(대표자)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휴·폐업하고자 할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판매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쓰레기봉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위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2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u>쓰레기봉투판매 지정서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u></p> <p>3. <u>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을 옥외에 부착</u></p> <p>4. <u>모조 쓰레기봉투 및 파손 또는 오물 묻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지</u></p> <p>5.·6. (생 략)</p> <p><u><신 설></u></p> <p>7. (생 략)</p> <p>② (생 략)</p> <p>제6조(판매소 취소)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및 표시판을 -----</u></p> <p><u><삭 제></u></p> <p>4. <u>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u></p> <p>5.·6. (현행과 같음)</p> <p>7. <u>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 이상의 물량 확보</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판매소 취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u></p>

관계법령 발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22.1., 환경부)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라. 종량제봉투의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

2) 판매소 지정·운영·감독

-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시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정식 양수의무,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의무, 규격가격표 부착의무, 불법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의무, 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의무 등 영업상 의무에 관하여 고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10. 22.]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5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3. 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인천 청년공간 확대구축」 사업추진에 따라 지난 '22년 11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이에 따라 청년공간 등 용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함.
-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시설의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시설 목적·정의·기능 규정
- 청년시설 사용허가, 보유 물품의 대여 기준 규정

-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기준 규정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일자리정책과, 전화 560-0941, 팩스 560-27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인천 청년공간 확대구축」 사업추진에 따라 지난 '22년 11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이에 따라 청년공간 등 용어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함.
-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청년시설의 사업내용, 지원기준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년시설 목적·정의·기능 규정
- 청년시설 사용허가, 보유 물품의 대여 기준 규정
-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 지원기준 규정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시설”이란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센터는 물론 청년창업·청년일자리 등 청년과 관련한 목적별 청년 특화시설 등 청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체를 일컫는다.
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청년시설의 구분 및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청년시설은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청년시설의 조성 및 운영

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 추진
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
5.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

6.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시설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년시설 사업의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항
2. 청년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
3. 청년정책 관련 정보 교류
4. 그 밖에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② 협의체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년시설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청년정책위원회”라 한다) 청년위원장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참여단장
4. 청년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⑦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⑧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시설 운영 업무 담당으로 한다.
- ⑨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⑩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프로그램 수강료 등)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1.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구청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예를 따른다.

1.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요청을 한 경우(전액반환)
2.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
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강사 또는 강의 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③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2항제1호를 우선한다.

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제10조(대여) ①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한 물품은 시설 내에서 운영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미디어실의 촬영장비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대 5일을 대여할 수 있다.

④ 물품 대여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멤버십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활성화 및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해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은 청년시설 및 청년시설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

② 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사업 참여자 등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멤버십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멤버십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멤버십 회원 대상 청년정책 정보

2. 청년시설 행사 및 이벤트 참여 우선권

3.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이 경우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청년정책 및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도가 우수한 청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인식 확산과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명칭	위치
청년공간	청년센터 서구1939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94번길 19, 6층

[별표 2]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	분야	지원내용	지원횟수 및 금액
청년 공간	역량강화	자립에 필요한 법률상담	1인당 연 5회 미만, 50만원 이하
		역량강화 프로그램	1인당 연 1회 30만원 이하
		청년 강사 양성과정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	1인당 연 1회 50만원 이하
	문화·예술 건강	정신건강관련 상담 (화상상담 포함)	1인당 연 4회 미만, 40만원 이하
		문화·예술 프로그램	1인당(건당) 5만원 이하
		건강 프로그램	1인당(건당) 10만원 이하
	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	소모임 활동비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	3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 팀당 60만원 이내
		모래알 정책실험 프로젝트	프로젝트 당 200만원 이내
		간담회 또는 좌담회 등	식비 또는 다과비 지급 (매식비 기준 단가)
		활동지원 프로그램	1인당(건당) 10만원 이하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 (제12조제4항)

구분	항목		마일리지 범위	1일 제공(사용) 한도	비고
청년 공간	적립	청년센터 서구1939 출석	500점 이내	-	1일 1회
		청년센터 서구1939 홍보 (공간 및 프로그램)	2,000점 이내	4,000점 이하	
		멤버십 친구 추천	2,000점 이내	4,000점 이하	본인 멤버십 가입 당일 친구추천 인정 불가
	사용	커피 1회 이용권	500점 이내	멤버십 한도 내	
		굿즈 교환	20,000점 이내	20,000점 이하	개당 3,000원 범위 내의 굿즈
		청년참여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	40,000점 이내	40,000점 이하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홍보 방법	시기	대상	홍보 물품	지급 기준	제공 액수 한도 (1회당)	
					1인당	총액
공모전	연 2회 이하	참여자	서구사랑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수상자 및 참가자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SNS 이벤트	연 12회 이하	참여자	서구사랑상품권 (경품) 또는 굿즈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참여자	2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관계법령 발취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의견제출서

검토구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 56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3. 1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 녹청자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전결 규정 및 전결처리 사항 신설(안 제26조, 별표 5)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문화관광체육과, 전화 560-5935, 팩스 560-27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녹청자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전결 규정 및 전결처리 사항 신설(안 제26조, 별표 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 라. 기 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사무전결) 박물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녹청자박물관 사무위임 전결처리 사항(제26조와 관련)

부 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 당	실 장	관 장	수탁기관장
	1. 지시사항 가. 구청장·수탁기관장 지시사항 및 결과보고 나. 추진사항 자료취합			○	○
	2.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안건결정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나. 의결사항 및 기본방침이 확정된 사항의 시행 다. 위원 위·해촉 라. 일정통보 마. 운영경비의 지출 등			○ ○ ○ ○	○ ○ ○
	3. 구의회 관련업무 가. 요구목록 작성 나. 질의답변 자료 제출			○	○
	4. 복 무 가. 관내출장,조퇴,외출,초과근무명령 (1) 관장 (2) 정규직 직원 (3) 무기계약직 직원 나. 관외출장,연가 및 휴가 (1) 관장 (2) 정규직 직원 (3) 무기계약직 직원			○ ○ ○ ○ ○ ○ ○	○
	5. 직원임용(채용, 승진, 휴직, 복직,직위 해제, 면직 등)				○
	6. 호봉승급			○	
	7. 회의 소집 가. 직원회의 나. 업무담당자 회의		○	○	
	8.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가. 연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나.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시행 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 ○	○
	9. 사무 인계·인수 사항 가. 관장 나. 관장이하 직원			○	○

부 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 당	실장	관장	수탁기관장
	10. 직원의 업무분장			○	
	11. 기 타				
	가. 소속직원의 배치			○	
	나.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사역			○	
	다. 물품 관리 및 보관	○			
	라. 도서구입 및 정기간행물 구독			○	
	마. 각종 홍보물 및 인쇄물 제작(안) 결정			○	
	바. 각종 일지 및 대장정리			○	
	사. 보안점검 및 확인	○			
	12. 민원처리				
	가. 청원·진정·건의서 접수 및 처리(5인이상)				○
	나. 청원·진정·건의서 접수 및 처리(4인이하)			○	
	다. 일반 민원(청원·진정·건의서 제외) 및 인터넷 민원처리			○	
	13. 규정·공고, 고시 및 질의				
	가. 정관·규정·내규의 제정과 개폐요구 및 고시				○
	나. 결정사항 이행			○	
	다. 공고문, 광고문의 게시	○			
	라. 공고문의 시행			○	
	마.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해석의 질의			○	
	바. 규정집 정비	○			
	사. 규정집 입안 및 승인요청			○	
	14. 공 사				
	가. 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1,000만원 이상)				○
	나. 공사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1,000만원 미만)			○	
	다. 공사착공 명령과 감독	○			
	라. 공사감독관 지정			○	
	마. 착공계 및 준공계 처리			○	
	바. 공사감독일지 및 인부점검	○			
	사. 공사하자 보수명령			○	
	아. 공사기간 연기명령			○	
	자. 공사의 중지 및 해지명령			○	
	차. (관급)자재 수불	○			
	15. 검수 및 검사				
	가. 공사, 용역, 제조, 물품의 검수 및 검사	○			
	나. 검수(검사)관 임명			○	
	다. 관급자재의 검사	○			
	16.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가.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1,000만원 이상)				○
	나.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수립(1,000만원 미만)			○	
	다. 유지보수 점검표 작성	○			
	라. 분야별 시설관리 및 계획				
	(1) 운영계획(건축, 소방, 전기, 기계, 조경, CCTV 등)			○	
	(2) 기계실, 전기실, 소방, 가스, CCTV 등 점검일지	○			

부 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 당	실장	관장	수탁기관장
	17. 박물관 안전관리				
	가. 연간 안전관리 종합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나. 계절별 안전관리 시행			○	
	다. 분기별 안전관리 시행			○	
	라. 특별 안전관리 시행			○	
	마. 안전점검 일지		○		
	18. 프로그램 운영				
	가. 수강생 모집 공고			○	
	나. 수강생 설문조사			○	
	다. 프로그램 개발			○	
	라. 수강생 관리		○		
	마. 등록신청서 발급		○		
	바. 강의실 운영		○		
	사. 가마운영		○		
	아. 공모(사업) 신청 및 발굴			○	
	19. 전시실 운영				
	가. 연간 전시 계획수립				○
	나. 특별기획전 계획수립				○
	다. 유물관리		○		
	라. 수장고관리		○		
	20. 예산				
	가. 예산(안) 작성				○
	나. 예산안 감독부서 협의			○	
	다. 예산전용 및 승인요구			○	
	라. 분기별 민간위탁금 신청			○	
	21. 회계관리				
	가. 예산집행 품의 1,000만원 이상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제외)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제외 모든 예산집행 품의				
	나. 예산집행 품의 1,000만원 미만 (인건비, 공공요금 및 수수료 포함)			○	
	다. 지출 및 지급명령			○	
	라. 증빙서류의 보관		○		
	마. 수입금 수납 및 납부 관리		○		
	바. 월별수입 및 지출현황 관리		○		
	사. 세입예산의 징수결정			○	
	22. 세입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				
	가. 세출(입) 결산보고				○
	나. 지출결산 증빙			○	
	23. 재물조사			○	

부 문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구 분			
		담 당	실장	관 장	수탁기관장
24. 공무원 인력관리					
가. 인력채용					○
나. 근무상황관리			○		
다. 재계약관리					○
25. 홍 보					
가. 홍보계획 수립				○	
나. 각종 보도자료 관리				○	
다. 해명, 인터뷰자료 관리				○	
26. 후생복지					
가. 급여 및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	
다. 보험료 납부 및 신고				○	
라. 산재 신청 및 관련서류 신고 등				○	
27. 문서심사					
가. 문서 등록대장			○		
나. 문서 접수대장			○		
다. 문서 발송			○		
28. 문서접수					
가. 문서접수의 분류			○		
나. 문서 발송 및 우편물 대장 정리			○		
29. 공인관리					
가. 공인의 신조(개각 및 폐기)					○
나. 공인관계 대장 기록유지 보존			○		
다. 인영부 기록			○		
라.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	
30. 물품취득처분 및 운영관리					
가.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불용결정				○	
나. 물품보관 및 출납				○	
다. 유물 수복, 매입, 매각, 폐기(1,000만원 이상)					○
라. 유물 수복, 매입, 매각, 폐기(1,000만원 미만)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 신설 >	<u>제26조(사무전결) 박물관의 전결</u> <u>처리 사항은 별표 5와 같다.</u>